



제308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남양주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정현미 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서

2024. 12.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남양주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제안경과

- 본 조례안은 2024년 11월 13일 정현미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동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임.

2. 제안이유

- 남양주시 지역의 일자리 발굴, 구인·구직 정보 제공, 취업 교육 등 체계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자리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양주시민의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알선,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안 제1조~제2조)
- 나. 센터의 명칭, 설치·운영 및 기능을 규정(안 제3조~제5조)
- 다. 센터의 상담창구, 직업상담사 배치 및 위탁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제7조)
- 라. 수탁자의 준수사항 및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안 제8조~제9조)
- 마. 위탁계약 해지 및 다른 기관 등과의 협력을 규정(안 제10조~제11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1
- 나. 예산조치 : 붙임2 (비용참조)
- 다. 관련부서 : 일자리정책과
- 라. 입법예고 : 2024. 11. 13. ~ 11. 19. (6일간) / 의견없음

5.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만 15세 이상인 인구 중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사람인 비경제활동인구가 점차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청년일자리 대책 및 근본적인 취업난 극복을 위하여 남양주시 지역의 일자리 발굴, 구인·구직 정보제공, 취업 교육 등 취업알선서비스 제공을 위한 남양주일자리센터를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현재 남양주시는 2010년 2월부터 ‘남양주일자리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20년 넘게 시민들의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알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다양한 성과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일자리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를 명문화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안으로서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자료 1 :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

-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 12곳 조례 제정 (광역 1곳 + 기초 11곳)

[표1]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

(24. 10. 기준)

순 번	지자체	조 례 명	제 · 개정일자
1	경기도	경기도 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2020. 03. 16.
2	가평군	가평군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16. 10. 26.
3	광주시	광주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19. 09. 27.
4	고양시	고양시 일자리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2020. 01. 07.
5	부천시	부천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23. 12. 26.
6	성남시	성남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24. 07. 01.
7	수원시	수원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21. 05. 12.
8	안산시	안산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18. 02. 28.
9	오산시	오산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21. 12. 23.
10	용인시	용인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20. 05. 15.
11	하남시	하남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23. 05. 01.
12	화성시	화성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19. 11. 15.

■ 참고자료 2 : 남양주일자리센터 운영실적 및 직업상담사 배치현황

[표2] 24년 남양주일자리센터 운영실적

(24. 10. 31. 기준)

년도	성과목표 (정부합동평가)	실 적 (10. 31기준)				
	알선 취업자 수 (12월 말 기준)	구인등록	구직등록 (A)	취업자 (B)	알선 취업자 수	취업률 (B/A)
2024	2,259명	4,197명	10,168명	4,156명	2,134명	40.8%

[표3] 직업상담사 배치 현황

인원	배치현황		운영 방식
직업상담사	고용복지+(1)	주민센터, 읍면동(10)	
총 20명	6명	14명 ¹⁾	직영

¹⁾ 진접읍(2), 화도읍(2), 별내동(2), 와부읍(2), 진건읍, 호평동, 금곡동, 다산1동, 오남읍, 퇴계원읍

☑ 「직업안정법」

-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국내 직업소개 업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구인자·구직자에 대한 국내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정보제공 업무를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구인자·구직자에 대한 국내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정보제공 업무를 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구인자·구직자에 대한 국내 직업소개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2장(제5조 및 제7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직업상담원의 자격) 법 제22조제2항 본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소개하려는 직종별로 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 직업지도, 직업훈련, 그 밖에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4. 노동조합의 업무, 사업체의 노무관리업무 또는 공무원으로서 행정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6. 삭제 <2012. 6. 5.>
7.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사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으로서 교원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8.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9.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남양주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4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자리 발굴, 구인·구직 정보 제공, 취업 교육 등 취업 알선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센터를 설치한다.
 - ② 센터는 일자리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운영한다.
- 제7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센터의 운영을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생략)
 - ③ 시장은 수탁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나. 비용 발생 요인

- 현재 市 직영으로 일자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은 직업상담사 공무원(18인), 기간제(2인) 인건비 및 여비, 일자리센터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가 있음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현재 남양주일자리센터를 市 직영으로 운영 중이며 운영에 필요한 직업상담사(공무직, 기간제) 20명 인건비 및 여비, 일자리센터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의 24년도 예산을 반영하였음.
- 위탁관리 운영에 대한 계획이 없으므로 향후 5년 소요액은 인건비 상승에 따른 추계액임

나. 추계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총 소요액		746	769	800	827	859
일자리센터 운영지원	사무관리비	21	21	25	25	30
	공공운영비	5	5	5	5	5
시군 일자리센터 운영지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44	44	46	48	50
	국내여비	4	3	4	4	4
인력운영비 (시군일자리센터 운영지원)	인건비	672	696	720	745	770

다. 재원조달방안: 2024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3. 기타사항: 해당없음

4. 작성자 : 재정경제국 일자리정책과장 이봉규